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To Monitor Use of Tax Rule to End Companies' Treaty Shopping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8, pg. 689\)](#)

OECD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 검토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우려 속에서 2020년까지는 양자조약(bilateral tax treaties)의 주요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목적 기준(purpose test)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OECD는 공동 심의 과정(peer review process)을 통하여 국가들이 어떻게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을 적용하는 지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목적 기준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구조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는 것이 주요 목적임이 발견되었을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함으로써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OECD 세무 국장인 Pascal Saint-Amans는 "주요 목적 기준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Pascal Saint-Amans는 9월 5일 서울에서 주최된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학술총회에서 OECD는 주요 목적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은 지금까지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주요 목적 기준을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01 October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확립하는 것이 조세조약남용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주관적인 목적 기준이 세무당국에 부여하는 권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 기준의 주요 고려사항을 포함한 표현 방식 및 세무당국의 주요 목적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목적 기준을 다루고 있는 OECD 다자간 조약(Super-tax treaty)의 폭넓은 적용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암스테르담대학교 국제 세법 교수 및 PwC의 글로벌 세무 정책 담당자인 Stef van Weeghel은 2020년 초까지 “실제로 대부분의 양자조세협약의 Super-tax treaty 관련 주요 목적 기준도 적용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 목적 기준은 OECD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 1,360개가 넘는 양자간 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ies)을 보완할 것입니다. OECD 다자간 협정은 최종 비준안이 예치된 첫 9개 관할권에 대하여 1월1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맨섬, 저지, 폴란드,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스웨덴, 뉴질랜드 및 영국입니다.

전반적으로 83개의 관할권이 조약 비준의 첫 단계인 다자간 협정을 서명하였으며, 주요 목적 기준 관련 규칙은 양자간 협정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OECD는 공동 심의 과정을 통하여 관할 세무당국이 조약 남용 방지 조치(Action 6)를 포함한 BEPS Action Plan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평가합니다. Saint-Amans는 OECD는 단순히 조세 조약 항목에 주요 목적 기준 관련 규칙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주요 목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Ireland: Proposed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egime](#)

아일랜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과세 제도 개정안

개정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2018년 9월 7일, 아일랜드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아일랜드가 개정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regime, 이하 “CFC 제도”) 개요 관련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피드백 마감일은 2018년 9월 28일입니다.

2018년 9월5일 발표된 아일랜드 법인세 지침에는 EU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에서 명시한 아일랜드가 선정한 CFC 제도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가 CFC 제도에서 허용된 두 가지 조세회피 방지 조치 접근방식 중 Option B를 채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접근법은 CFC제도를 비정상거래(non-genuine arrangement)에 의해 발생한 유보이익을 저세율이 적용된 피지배 외국법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이전가격 독립기업원칙에 근거하여 추산되는 아일랜드 소재 모회사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 아일랜드 소재 본사 및 그룹사가 수행하는 유의미한 기능이 피지배 외국법인 소득창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소득 금액은 CFC제도에 근거하여 과세가 될 것입니다.
- 과세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상거래 이익(trading income)의 경우 12.5%, 상거래 이외의 이익(non-trading income)의 경우 25%가 적용됩니다.
- 피지배 외국법인의 자산 및 사업위험 관리에 기인하는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지 않을 시에 CFC제도에 근거한 과세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경제적 실질이 제한적이며 저세율 관할권에 소재한 cash-box 회사들의 유보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조치

CFC제도의 개요는 아일랜드의 정책 입안자가 조세회피 방지 조치(ATAD)하에 허용되는 여러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정권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안되었습니다.

- 납세자가 저 세율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피지배 외국법인은 제외되도록 허용하고,
- 낮은 이익률 또는 낮은 이윤을 남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피지배 외국법인은 제외하고,
- 독립기업원칙에 근거하여 책정된 피지배 외국법인의 유보이익 및 아일랜드의 이전가격 제도의 범위에 이미 포함된 유보이익은 제외하고,

-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피지배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한 이익이 CFC제도 관련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 피지배 외국법인 과세 소득에 대하여 '신용할만한' 외국 세금을 상쇄하여 이중과세로부터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Nigeria: New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effective retroactively, March 2018

나이지리아: 새로운 이전가격 법안 도입, 2018년 3월부터 소급 적용

2018년 나이지리아 국세청(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FIRS)은 새로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일자로 발효된 기존 이전가격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개정된 법안은 2018년 3월 12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새로 도입된 법안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규정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 납세자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Penalties)

기준	과태료
제출기한 내 이전가격 서식 (Declaration Form) 미 제출시	N10 mil.(약 3,000만원)부과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일 당 N10,000(약 3만원)씩 추가 부과
조직구조도나 특수관계자 (connected person)현황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된 이전가격서식(Declaration Form) 미 제출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일 당 N25,000 (약 8만원)씩 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 기입한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의 1% 또는 N10 mil.(약 3,000만원) 중 큰 금액 부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잘못 기입한 경우	잘못 기입한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의 1% 또는 N10 mil.(약 3,000만원) 중 큰 금액 부과

이전가격동기화보고서(TPD)를 제출 기한 내 미 제출시	특수관계자간 거래 총 금액의 1% 및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지연일 당 N10,000(약 3만원)씩 추가된 금액 또는 N10 mil. (약 3,000만원) 중 큰 금액 부과
제출 기한 내 FIRS에서 요구하는 정보 미 제출 시	FIRS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당 1%씩 부과 및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지연일 당 N10,000(약 3만원) 씩 추가 부과

구매 약정서(Procurement arrangement)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제 3자로부터 구매한 재화, 자산, 용역 또는 기타 항목에 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가격동기화보고서(TPD)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제 3자가 발행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조사면제(Safe Harbour)규정

새로운 규정은 기존에 적용하던 조사면제(Safe Harbour)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Safe Harbour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규정은 때에 따라 특정 지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Connected Persons)에 대한 정의 개정

새로운 규정은 기존 특수관계자(connected taxable persons)의 용어를 connected persons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재정적 또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제 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재정적, 상업적 또는 운영상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 됩니다.

실제 위험 관리 기능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법인

새로운 규정은 Capital-rich-low-function을 실제 위험 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법인은 자금 조달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본만 투자하는 회사로 무위험수익(risk-free returns) 정도만이 보장될 뿐이며 실제 실현된 손익과 관련된

위험 부담 주체는 실제 위험 관리 기능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룹 내 용역거래(Intra-group services) 및 무형자산

새롭게 도입된 규정은 그룹 내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거래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무형자산의 양도 이외 무형자산 사용권 허여와 관련하여 조세 목적상 손금인정 최대 금액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및 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의 5%까지입니다.

이전가격동기화보고서(TPD)

특수관계자 간 연결매출 거래금액이 3 억 나이라(약 9억 3,000만원)미만인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동기화보고서(TPD) 구비 의무에서 면제 됩니다.

업데이트 된 연례 이전가격(TP) 서식 제출

새로운 규정은 합병 및 인수(M&A), 사업구조개편 등과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할 시 업데이트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업데이트된 이전가격 서식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회계연도 말 6 개월 이내에 F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이사회 임원의 선임 또는 퇴임에 따라 구성현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FIRS에 연례 이전가격(TP declaration) 서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이전가격 분쟁해결방법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기존규정에서는 FIRS의 결정에 납세자가 직접 과세적부심 제도(Decision Review Panel, DRP)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은 FIRS의 결정에 따라 이전가격부서 최종책임자만이 납세자의 DRP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CbC reporting – filing notification with HMRC](#)

국가별보고서- 영국국세청(HMRC)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제출

영국 국세청("HMRC")의 사전 신고서(Notification) 제출 의무 규정은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소재 위치, 다국적기업(MNE)의 사업활동 및 영국과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MCAA) 서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기사는 하나의 사전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영국 내 거주법인이 아닐 경우 두 번째 사전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HMRC의 사전신고서 제출의무는 최종모회사의 소재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모회사가 영국 내 거주하는 법인일 경우,

첫 번째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가 영국 내에 소재할 경우, 사전신고서를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영국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했을 경우, 두 번째 사전신고서 제출의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종모회사가 영국 내 거주 법인이 아닐 경우,

첫 번째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최종모회사가 영국 내 거주 법인이 아닐 경우, 다국적기업의 영국 내 거주 법인들은 사전신고서를 최종모회사 사업연도 말일까지 영국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을 이루는 영국 내 거주 법인이 하나 이상일 경우, 영국 내 거주하는 모든 법인(휴면 법인 포함)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하나의 사전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두 번째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제출은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내 거주 법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최종 제출 기한 내에 두 번째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예: 최종모회사의 소재 국가에서는 국가별보고서 신고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거나 국가별 보고서 신고가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 또는

- 최종모회사가 거주국인 관할권은 다자간협정에 서명하였지만 영국과 국가별보고서를 자동교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최종모회사가 거주국인 관할권은 영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에 서명하였지만, 영국과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현재까지는 국가별보고서 제출 초기 단계로 인해 관련 사항이 발생한 적이 없음)

다만, 최종모회사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관할권과 영국간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전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별보고서 다자간협정이 활성화된 국가의 명단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두 번째 사전신고서는 첫 번째 사전신고서를 재확인하거나 첫 번째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소재국가가 변경되어 포지션을 수정해야 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신고서는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